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18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유통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마. 실태조사 및 소비촉진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4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

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군수가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

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홍보·마케팅 관련 교육 및 사업

4.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제작 사업

5. 운송 사업

6.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관련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생산 연도(곡류만 해당한다)
5. 등급
6. 무게(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무게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